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 연구

2013. 11. 7

기승도, 김혜란

kiri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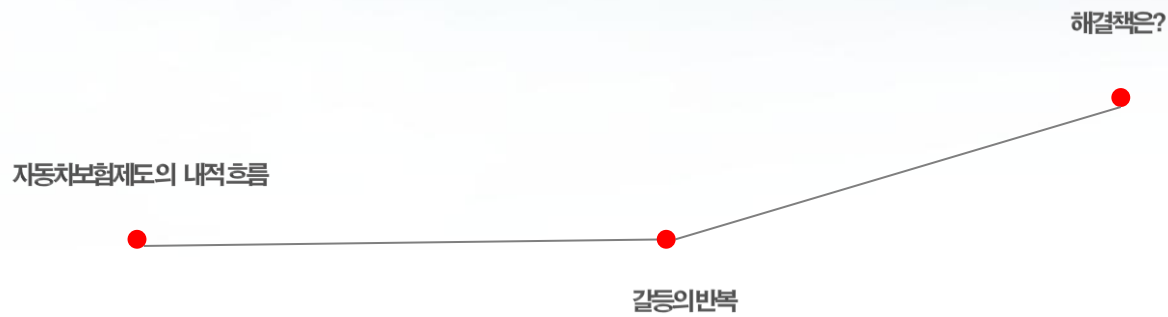
I. 서론	3
II. 사회적 합의모형 유도	7
III.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 방안	19
[해외사례]	34



ki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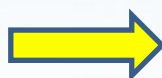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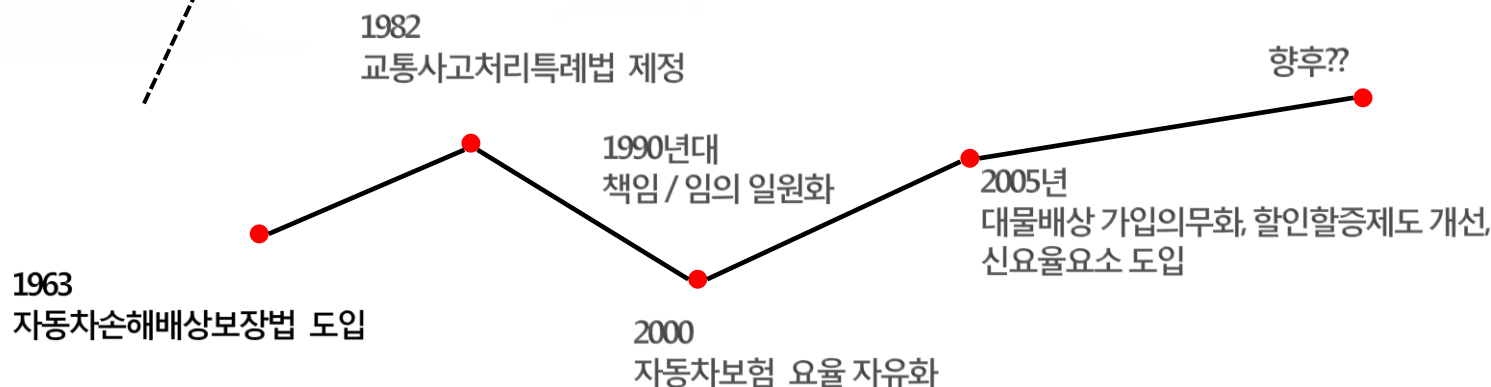
1. 자동차보험제도 내적 흐름

❖ 자동차보험에도 “자유화”와 “통제(여론의 압력)”라는 두 가지 상반된 흐름 존재

국민인식 : 자동차보험 = 의무보험



여론 압력의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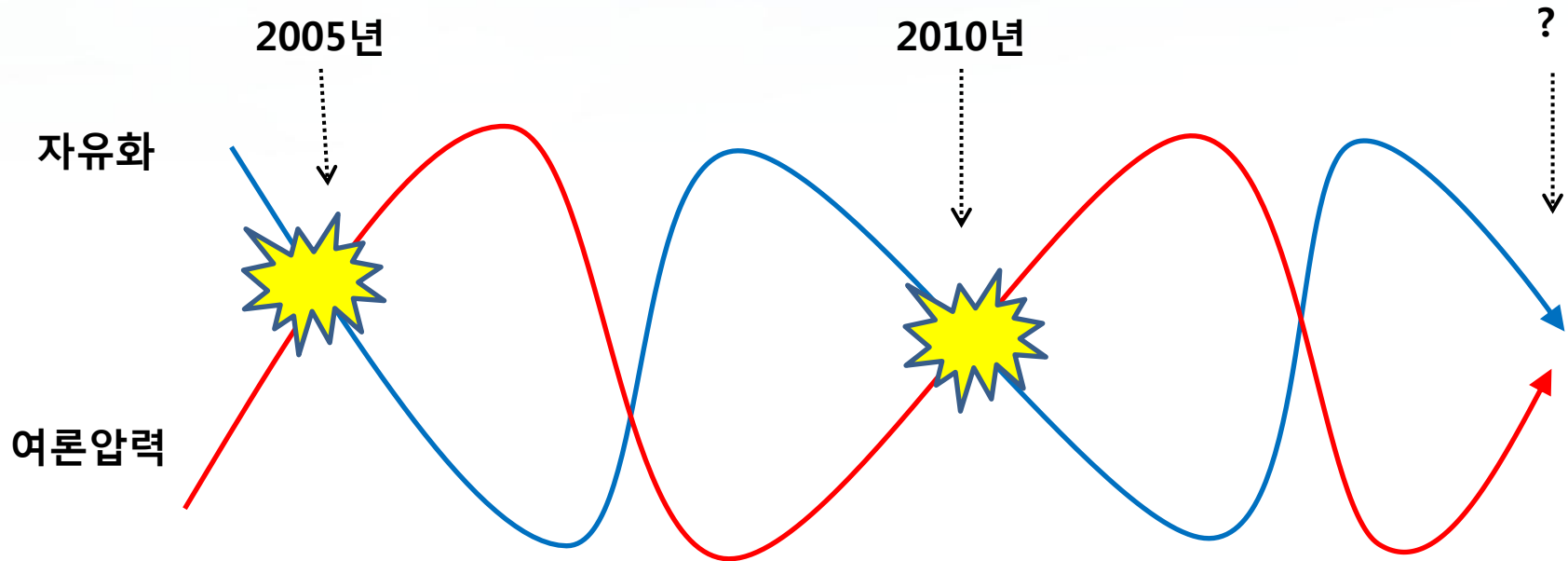
정책(회사 인식) : 자동차보험 = 일반보험(임의보험)



자유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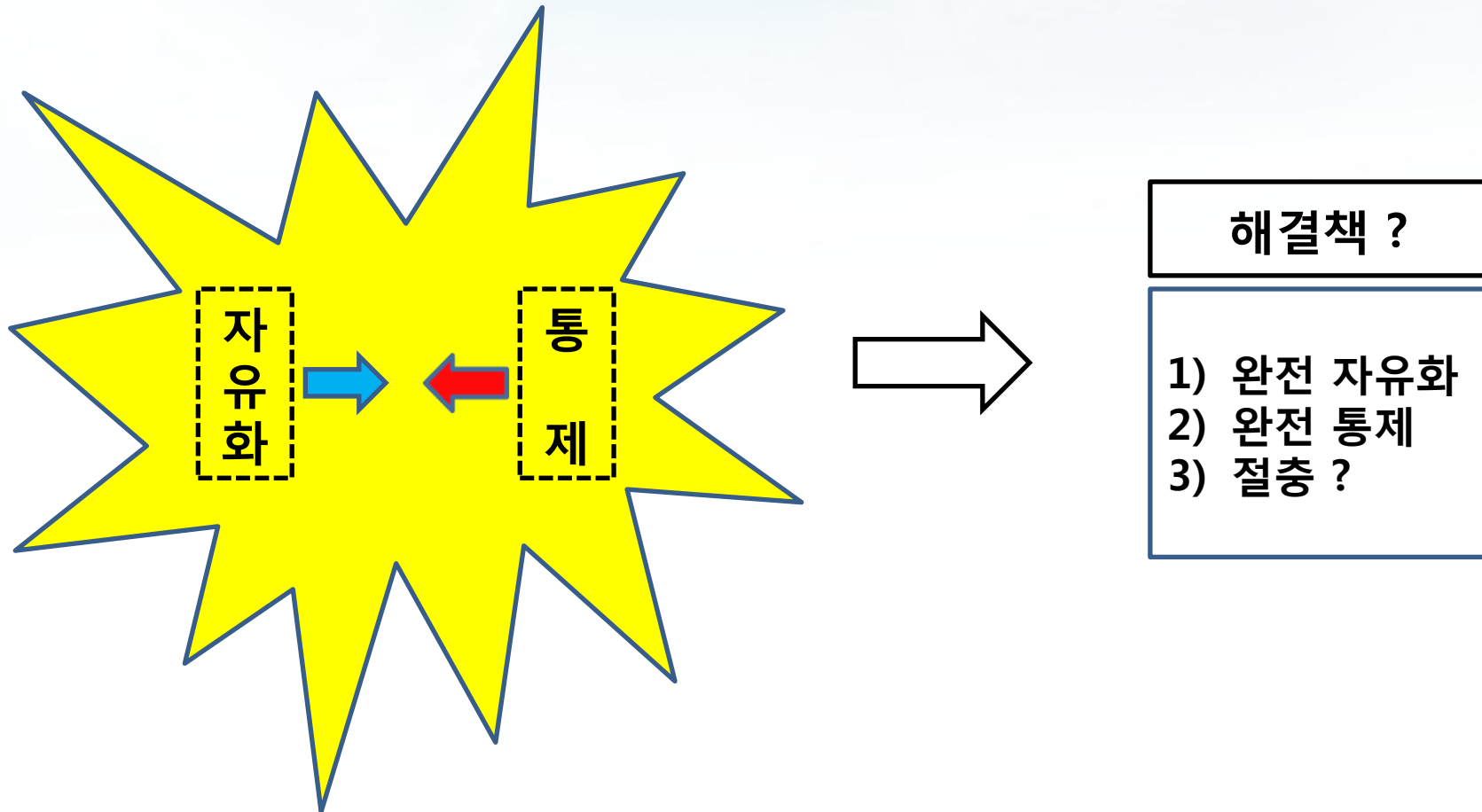
2. 갈등의 반복

❖ 두 힘이 서로 충돌하면서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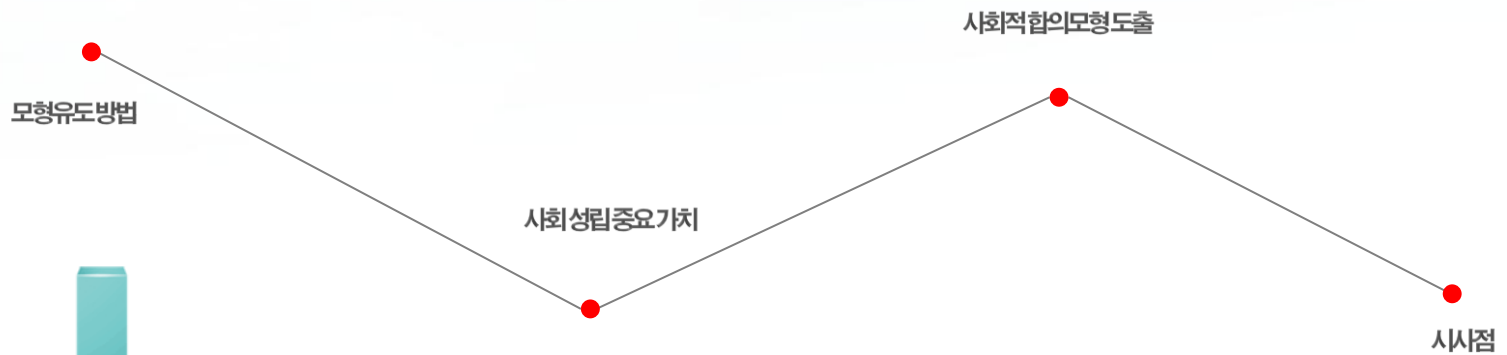


3. 해결책은?

❖ 자동차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의 반복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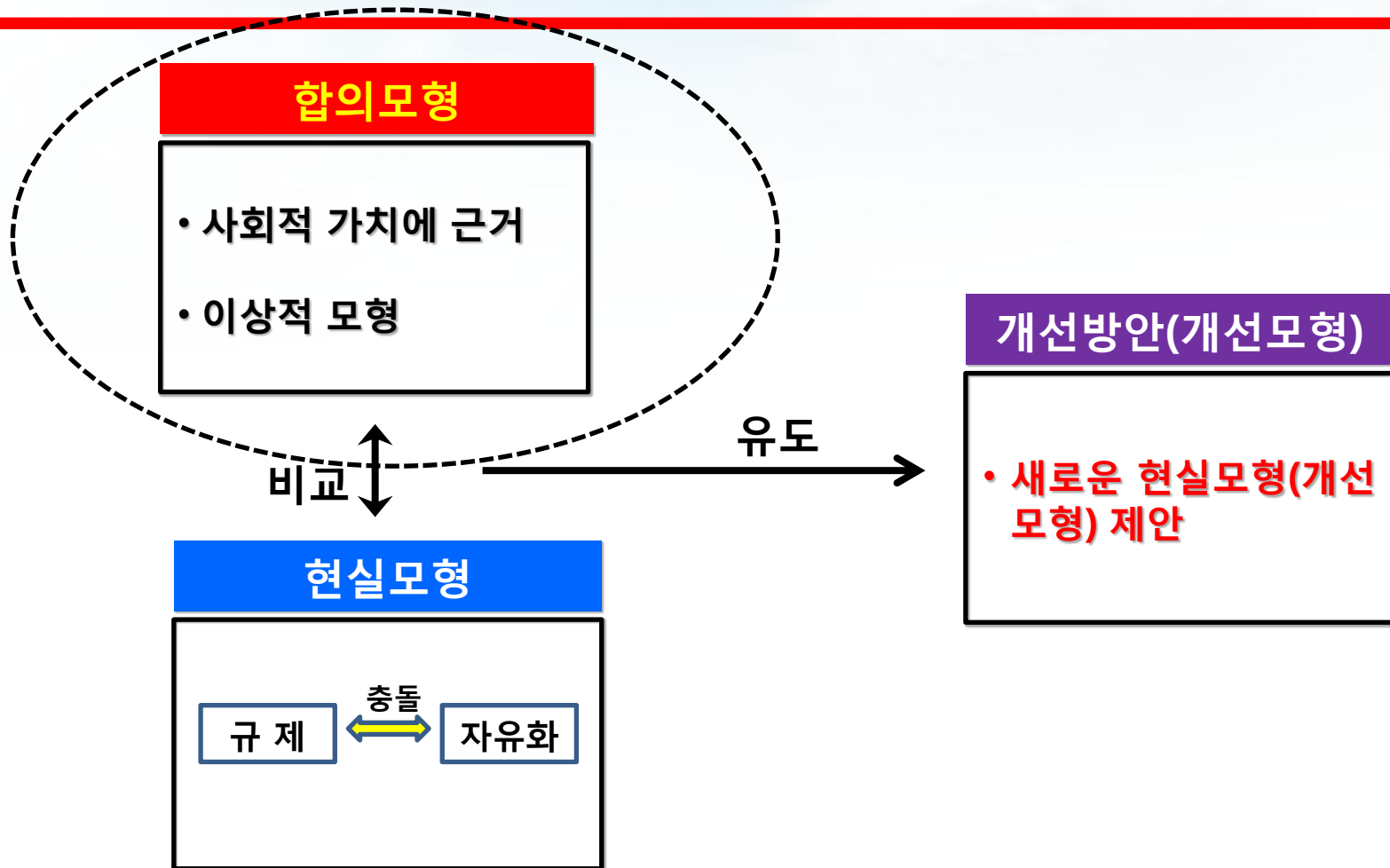


II. 사회적 합의모형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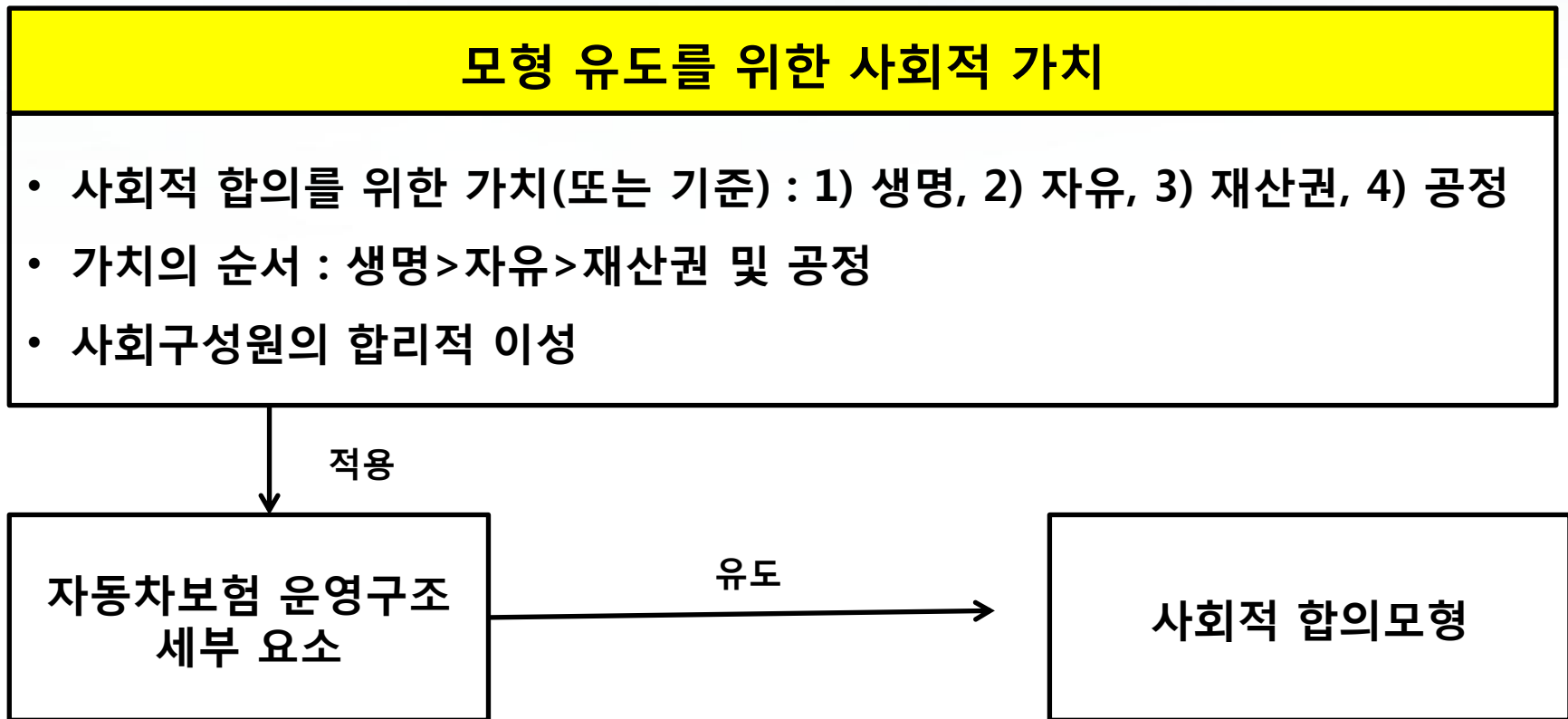
1. 사회적 합의모형 유도 방법

❖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모형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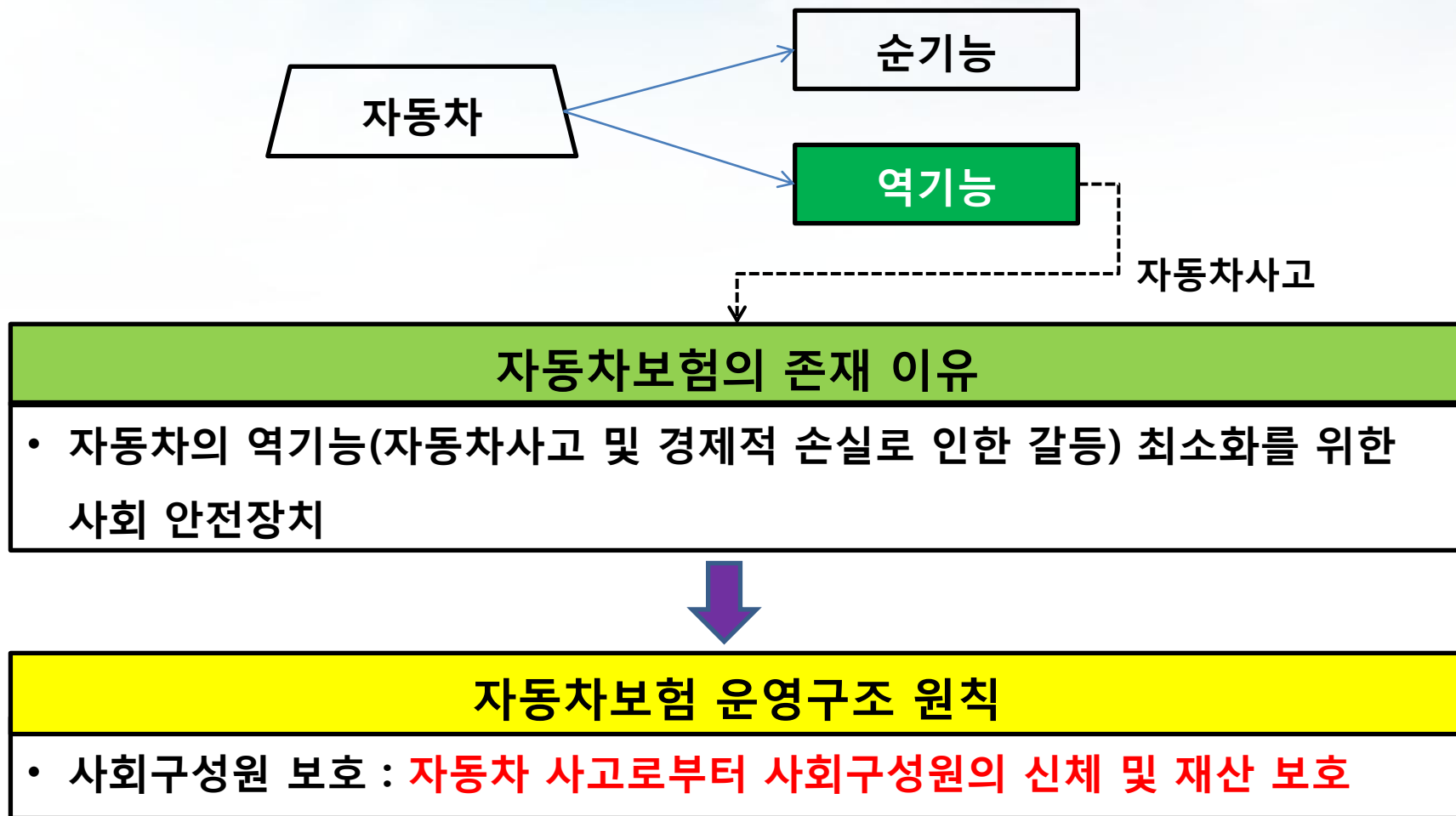
2. 사회 성립의 중요 가치

- ❖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가치는 “생명”, “자유”, “재산권”, “공정”임.
- ❖ 사회적 가치를 자동차보험 세부 운영모형에 적용 후, 합의모형 유도



3. 사회적 합의모형 유도 : 자동차보험의 본질

- ❖ 자동차 역기능(=사고 및 경제적 손실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자동차보험 역할



3. 사회적 합의모형 유도 : 보호장치 강제화 범위 **kiri**

❖ 규제담보(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와 자율담보(기타 담보)로 이원화 하여 보험제도 운영 필요, 가해자 불명사로 인한 피해자 보호 제도(정부보장사업) 필요

➤ 사고유형과 규제 대상

사고유형		강제화 대상	근거
대인배상사고		○	(타인 생명 존중)
대물배상사고		○	(타인 재산권 보호)
자기신체사고	사망	×	(모럴해저드)
	부상 및 후유장애	○	(생명 존중)
자기차량사고		×	
뺑소니사고 (가해자불명사고)	물적사고	×	
	인적사고	○	(생명 존중)



피해자 생명,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원적 운영구조 필요

3. 사회적 합의모형 유도 : 담보의 운영방법/재원

❖ 보험제도(보험보장 가능 부분)는 운행자 납부 보험료, 공적시스템(보험보장 부분 외 인적사고 부분)은 세금으로 운영

➤ 운영방법 및 재원

사고유형		운영방법	재원
대인배상사고		보험 (효율성)	운행자 (수익자부담)
대물배상사고		보험 (효율성)	운행자(수익자부담)
자기신체 사고	사망사고	보험 (효율성)	운행자(수익자부담)
	부상사고 (기본치료)	건강보험/공적시스템 (사회적 약속:생명보호)	세금 (사회적 약속:생명보호)
	부상 및 후유장애 사고 (추가보장)	보험(효율성)	운행자(수익자부담)
자기차량사고		보험(효율성)	운행자(수익자부담)
뺑소니사고 (가해자불명사고)	물적사고	보험(효율성)	운행자(수익자부담)
	인적사고	건강보험/공적시스템 (사회적 약속:생명보호)	세금 (사회적 약속:생명보호)



- 강제화 대상 담보(배상책임 담보) : 보험제도(운행자 납입)
- 기타 담보 : 가입자 자유, 다만 구성원의 신체 사상은 공적시스템

3. 사회적 합의모형 유도 : 규제담보 운영구조

- ❖ 보상한도 : 대인은 무한, 대물은 차량가액 이하
- ❖ 운영주체 : 국가 또는 민간,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

➤ 보상한도

규제담보	보상한도	보안장치	근거
대인배상	무한	1. 사회의 경제적 약자의 보험료 보조 2. 경제적 약자가 아닌 자의 무보험 상태에 대한 엄격한 처벌 3. 사회적 차원에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보장)하는 시스템 구축	생명의 무한가치
대물배상	차량가액 이하	-	보험사기 방지

➤ 운영주체

규제담보	운영주체	허용여부	근거
대인배상/ 대물배상	국가기관	○	➤ 국가기관 또는 민간회사 모두 장단점 존재 ➤ 두 주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사회구성원의 신뢰성 확보 장치 필요
	민간회사	○	

3. 사회적 합의모형 유도 : 규제담보 운영구조

- ❖ 상품내용 : 가능한 모든 종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또는 치료) 보장
- ❖ 요율구조 :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순화
- ❖ 손익구조 : No Loss, No Profit 원칙

➤ 상품내용, 요율구조 및 이익(손실) 원칙

구분	내용	근거
상품내용	1. 대인배상 : 고의를 제외한 모든 사고를 보장해주는 상품내용 2. 대물배상 : 보상범위 제한 가능 (보험사기 방지 등의 목적)	생명보호(대인) 보험사기방지(대물)
요율구조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되, 사고관련 요소는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요율결정 규칙을 만들 것	차별방지 및 사고감소유도
이익(손실) 제도	No Loss, No Profit	보험료는 세금의 성격

3. 사회적 합의모형 유도 : 규제담보 운영구조

- ❖ **요율요소** : 유전요소 및 차별요소 사용금지
- ❖ **상품내용** : 강제담보 상품내용은 회사별로 동일
- ❖ **요율수준** : 회사별 보험료 차이 가능

➤ 요율요소

요소구분	요율요소	가능여부	사용조건
재산관련	자동차 크기, 자동차 종류, 직업, 지역 등	○	1. 기준 요소로 사용(예,자동차배기량 등) 2. 사고 예방효과가 있을 경우 일부 허용 3. 개인의 인격과 연계된 요소 사용불가
유전적	성, 연령, 인종 등	×	절대 사용불가 (의지로 통제 불가능한 요소로 차별금지)
사고관련	사고할증·무사고할인, 교통법규위반여부 등	○	1. 사고예방효과가 있을 경우 허용 2. 사고예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기타	ABS장착 특별요율, 안전벨트, 사업비차등제도 등	×	사고예방효과가 있을 경우 일부 허용 (의지로 통제 불가능한 요소는 차별금지)

➤ 상품내용 및 요율수준

구분	비고
상품내용	모든 강제담보 상품내용은 동일 (피해자 보장 능력 확보)
요율수준	위험집단별(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능 (위험집단별 차이 반영)

3. 사회적 합의모형 유도 : 자율담보 운영구조

- ❖ 운영주체 : 요건을 갖춘 누구나 참여가능
- ❖ 상품내용 및 요율구조 : 시장참여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운영주체, 상품내용 및 요율구조

구분	내용	비고
운영주체	조건을 가진 모든 법인 (가입의 비강제성, 자유)	참여 요건 필요
		파산시 사회구성원 보호장치 필요
상품내용	자율 (가입의 비강제성, 자유)	사회에 해악을 주는 상품 금지
요율구조	자율 (가입의 비강제성, 자유)	-



- 법인도 사회구성원이며,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권리를 가짐.
- 자율담보에서는 가입자의 선택의 자유와 동등하게 법인에게도 공급방법의 자유를 주어야 함.

3. 사회적 합의모형 유도 : 자율담보 운영구조

❖ “유전적 요소 사용 금지” 이외의 사항은 회사자율 최대한 보장

➤ 요율요소

요소구분	요율요소	가능여부	사용조건
재산관련	자동차 크기, 자동차 종류, 직업, 지역 등	○	자유롭게 사용
유전적	성, 연령, 인종 등	△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사회구성원이 합의할 경우 일부 허용
사고관련	사고할증·무사고할인, 교통법규위반 여부, 주행거리 연동 등	○	자유롭게 사용
기타	ABS장착 특별요율, 안전벨트, 사업비 차등제도 등	○	자유롭게 사용

➤ 경쟁구조 및 요율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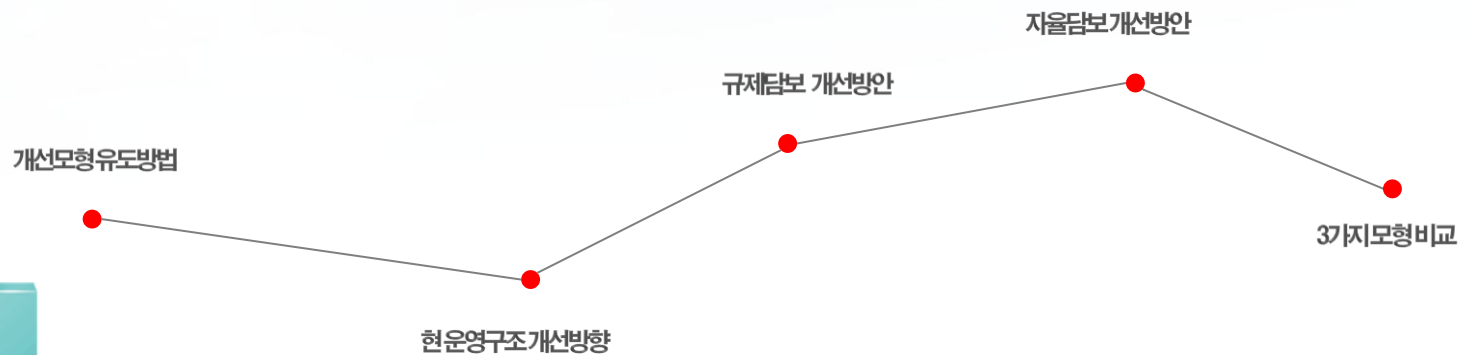
구분	내용
경쟁구조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유도 (경쟁을 통한 투명성 제고)
요율수준 결정	자율 (사회 구성원으로써 회사의 자율권 보장)

❖ 규제담보와 자율담보로 분리운영

사회구성원의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한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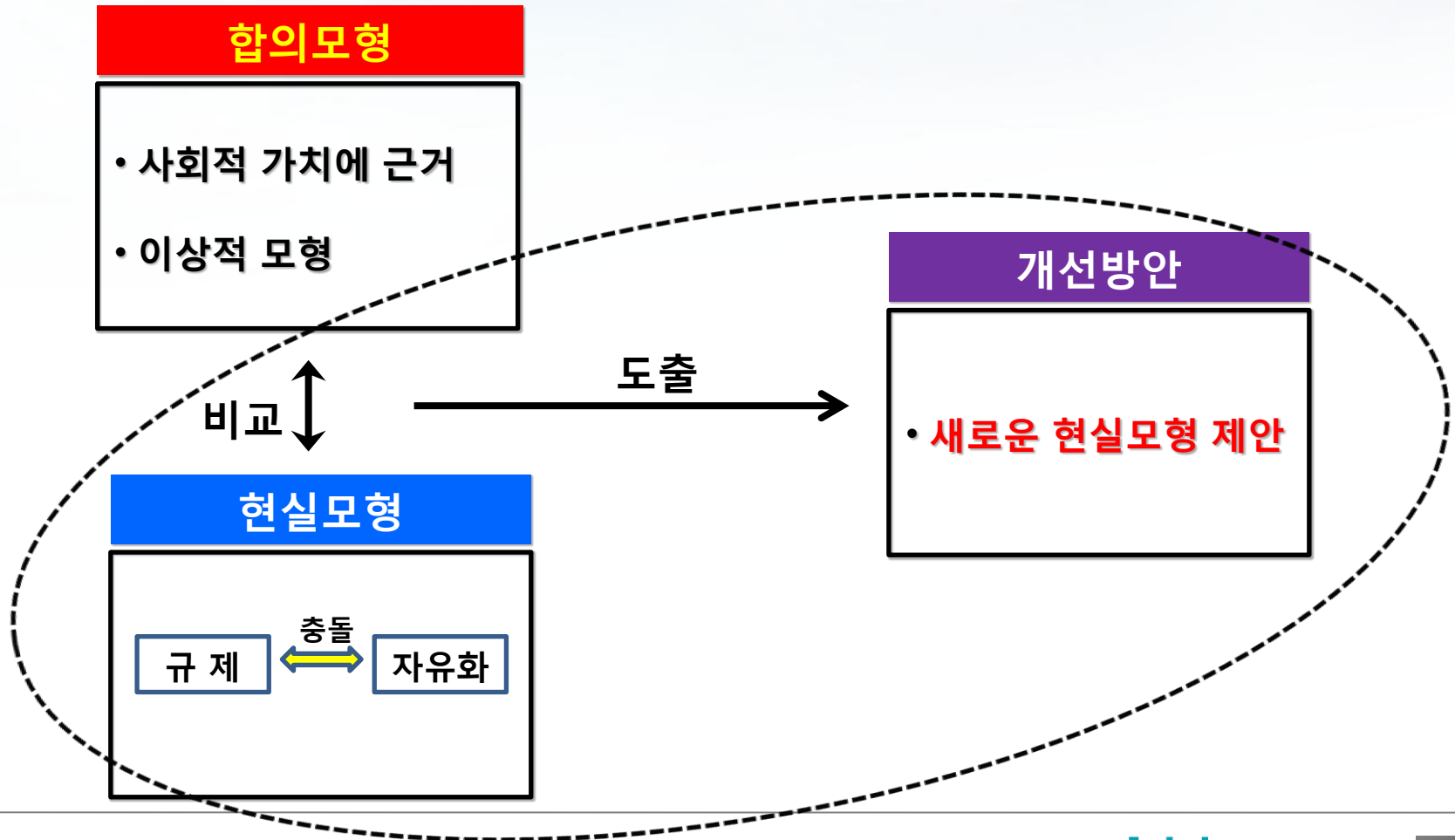
1. 규제담보의 대상은 대인배상(가입한도 무한), 대물배상(차량가액 이하)으로 해야 한다.
2. 규제담보의 상품내용, 요율구조 등은 차별이 최소화되게 일정 수준 통제가 필요하다.
3. 자율담보에서는 공급자(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자율담보라 하더라도 유전적 요소와 같은 요소로 인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III.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



1. 개선모형 유도방법

❖ 합의모형과 현실모형의 비교를 통한 새로운 현실모형 유도



2. 현 운영구조 개선방향

❖ 이원화 운영구조 정립

- ✓ 이원화 운영구조 정립(규제담보와 자율담보)
 - 해외 사례 : 일본, 중국, 캐나다 일부 주(매니토바, 퀘벡)
- ✓ 규제담보 세부개정방안 : 통제 강화
 - 이익 및 손실 원칙 도입 : 규제 담보 및 정부보장사업
 - 요율심의위원회 설치 : 규제 요율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 요율요소 사용규제 : 사고방지를 제외한 요소 추가 사용금지(장기적으로 단순 요율차등화 요소 사용범위 축소 유도)
- ✓ 자율담보 세부 개정방안 : 회사 자유화 확대
 - 요율결정, 상품내용 및 요율구조 : 회사 자율
 - 새로운 요율요소 도입 : Negative System 도입
 - 차량단독사고에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축소

3. 규제담보 개선방안

- ❖ 대상담보의 종류 : 대인배상 1, 대물배상
- ❖ 가입한도 : 대인배상1(사망기준 1억원), 대물배상(가입금액1천만원)
- ❖ 운영주체 : 민영보험회사

➤ 가입한도

담보종류	가입한도		비고
	가입금액	현행여부	
대인배상	1억원/2천만원/1억원	현실모형	장기적으로 무한으로 확대
	(사망/부상/휴유장애)		
대물배상	1천만원	현실모형	당분간 현행유지

➤ 운영주체

현행	개정
민영 손해보험회사가 운영	없음 : 현행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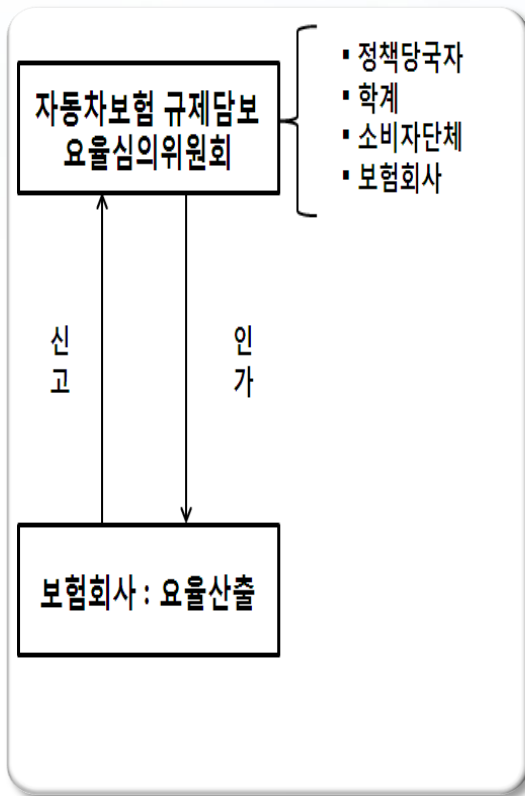
➤ 이익손실원칙

현행	개정
없음	이익손실원칙(규제담보 및 정부보장사업) : No Loss, No Profit 원칙에 근거한 보험료 조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보험업법에 명시

3. 규제담보 개선방안

❖ 요율결정 과정에 국민 여론 반영(요율심의위원회 설치)

➤ 요율심의위원회 운영 개념도



➤ 보험업법 시행령 규제담보요율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현행	개정
<신설>	제 ○ ○ 조(자동차보험 요율심의위원회) ① 법제127조에 따른 기초서류신고시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가입담보(대인배상 I 및 보상한도 1천만원 한도의 대물배상)의 요율조정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 요율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서 중요사항을 심의,의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 8명으로 구성된 9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금융당국자가 당연직으로 맡으며, 위원 8인은 다음으로 한다. 1. 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담당 임원들 중 2명 2. 학계에서 추천하는 2인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2인 4. 금융감독원에서 추천하는 2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담당임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규제담보 개선방안

- ❖ 요율요소의 규제 : 할인할증, 교통법규위반요율 이외의 사용제한. 다만, 현행 요율차등화 요소 사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 점진적으로 합의모형에 준한 수준으로 사용범위 축소

➤ 보험업법 별표 6의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현행	개정
가.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가.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단, 자동차보험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4.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신 설>	4.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바. 자동차보험 요율요소의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제담보의 요율요소로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무사고할인·사고할증요소,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등 사고감소를 유도하는 요율요소 이외의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9에서 규제담보의 요율요소, 요율구조 관련사항

현행	개정
☐ 요율 및 상품 관련 사항 <신설>	☐ 요율 및 상품관련 사항 1.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의 요율요소로 무사고할인·사고할증요소,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소 및 사고감소와 관련된 특별요율의 운영규칙은 참조순보험요율서의 요율구조에 따른다.

3. 규제담보 개선방안

- ❖ 신고기준의 적용대상을 규제담보로 제한
- ❖ 참조순보험요율서의 규제담보 요율요소 : 사고감소효과 제고 방향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9에서 요율 및 상품관련 사항

현행	개정
모든 담보에 적용	- 적용대상을 규제담보인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가입한도 1천만원)으로 제한 - 세부내용을 규제담보의 속성이 반영되도록 보완할 필요

➤ 참조순보험요율서 할인할증제도,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 요율운영구조

현행	개정
복잡한 제도로 사고감소 효과가 의문시됨.	사고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할인할증제도 및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를 평가하여 개선할 필요(장기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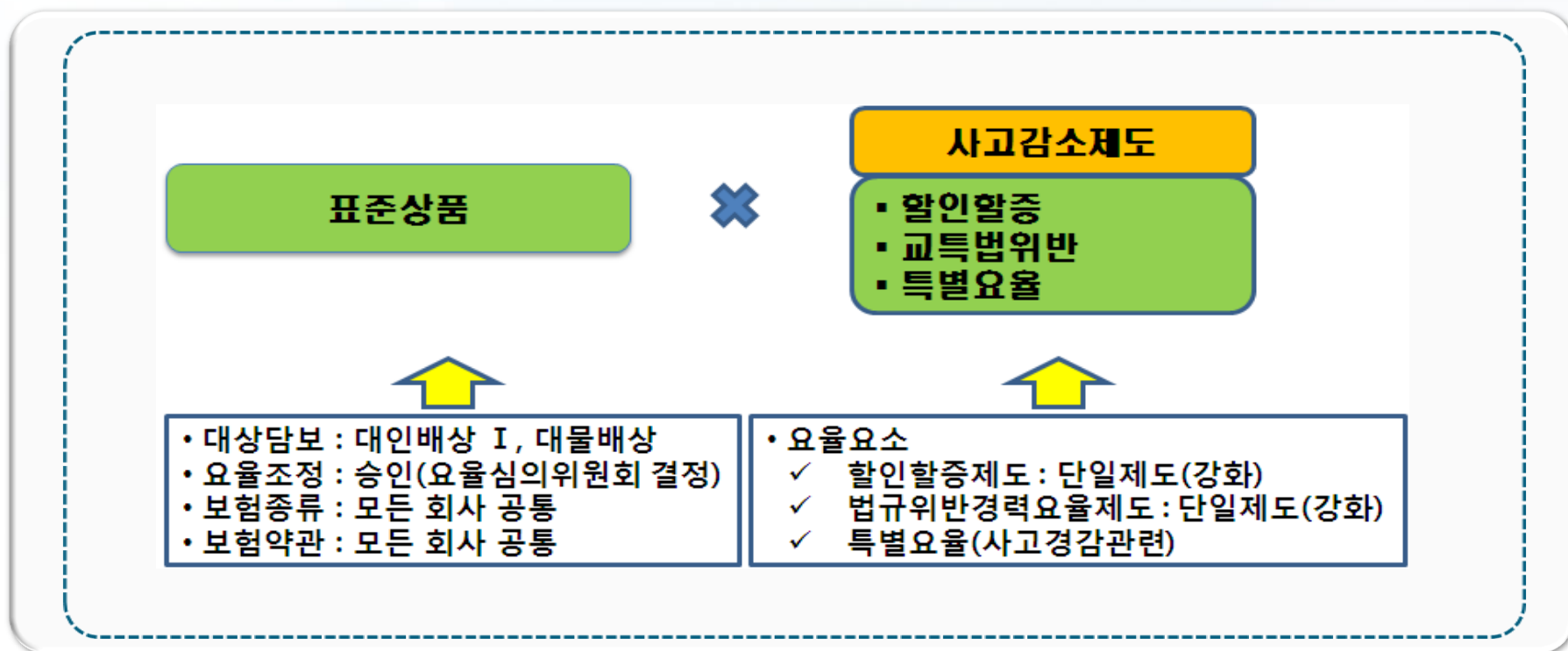
3. 규제담보 개선방안 : 개선모형

❖ 규제담보(대인배상1,대물배상)와 자율담보(기타 담보)의 운영구조 이원화

구분	사고/담보의 종류	운영 주체	상품내용	요율구조/ 상품내용	요율수준	가입한도	이익(손실) 원칙	요율 요소	요율 조정
규제 담보	대인배상Ⅰ (사망/부상/후장)	회사	모든 사고 (고의제외)	모두 동일	회사별 차이 허용 (예정손해율 수준요율결정)	1억원/2천만 원/1억원	No Loss, No Profit (규제담보, 정 부보장사업)	제한 (현행 인 정하되 단순화 지향)	제한 (여론 반영)
	대물배상		1천만원						
자율 담보	대인배상Ⅱ	회사	회사자율	회사자율	회사자율	자율	회사책임	회사 자율	회사 자율
	자기신체					축소 (차단독사망)			
	자기차량					자율			
	가해자불명 (뺑소니 등)								

3. 규제담보 개선방안 : 운영모형

❖ 규제담보 운영모형 요약



4. 자율담보 개선방안

❖ 운영모형 (요약) : 운영회사의 자율성 보장

구분	내 용
대상담보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무보험차 상해 담보 외에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의 모든 담보
운영주체	민영보험회사
이익(손실)원칙	회사자율
요율수준 및 조정	회사의 권한(단, 심사기준을 규제담보와 분리하여 자율성 강화쪽으로 수정)
상품내용 (약관내용)	① 표준약관의 범위를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으로 하고 그 이외의 모든 약관을 표준약관에서 제외(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 15>) ② 자율담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 운영방법 Negative System으로 변경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4. 자율담보 개선방안

❖ 요율요소 : 운영회사의 자율성 보장

➤ 보험업 요율요소 신고사항 개선(안)

현행	개정
가.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가.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단, 자동차보험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신설>	바. 자동차보험 요율요소의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자동차보험 자율담보의 요율요소로 인종차별 요소 등 유전적요소를 사용하거나 지역요소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요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심사기준 중 요율 및 상품 부분 개선(안)

현행	개정
<신설>	1. 자율담보 요율요소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고대상이 되는 요율요소 이외의 모든 요율요소는 회사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율담보에 적용될 수 있는 요율요소의 성격은 “인과성”, “비유전성”, “위험차이성”, “사회적 비차별성”, “통계적 유의성”을 갖추어야 한다.

4. 자율담보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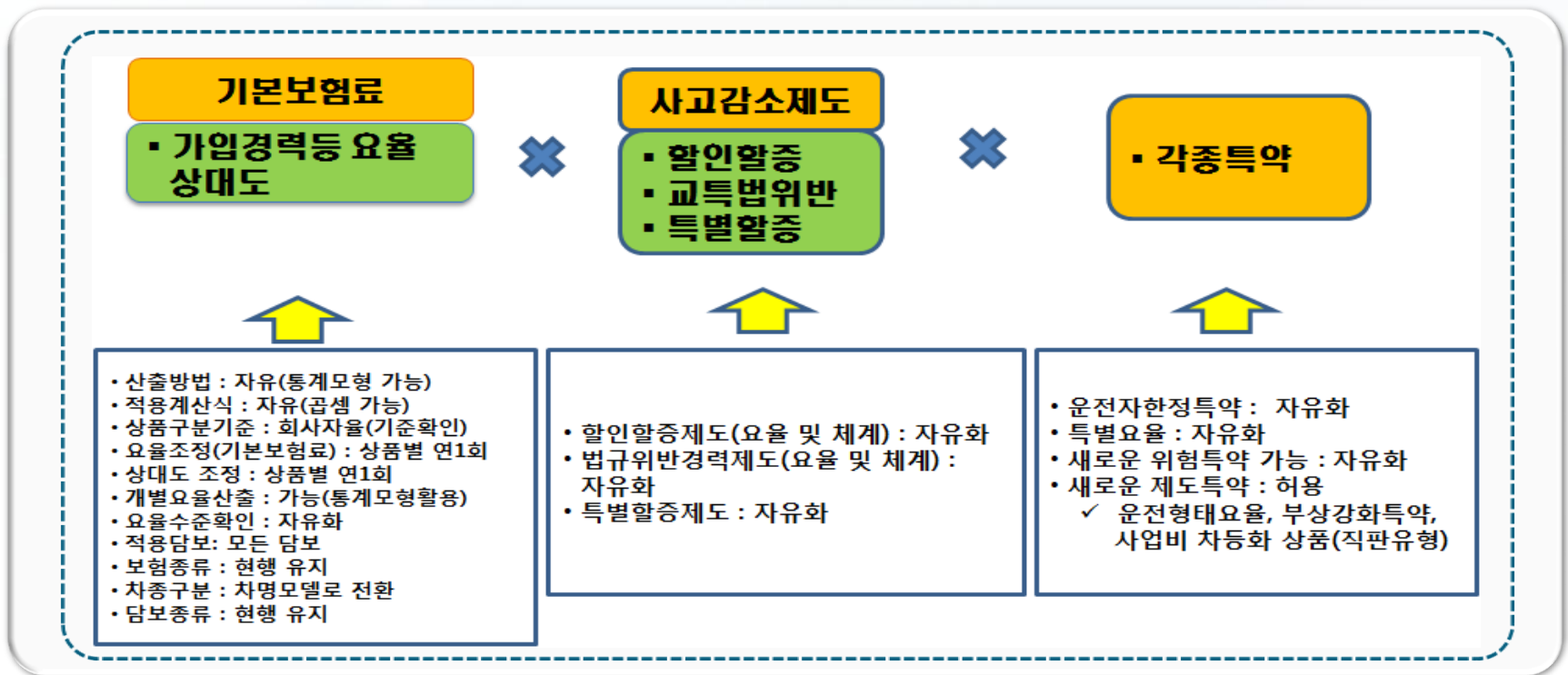
❖ 요율구조 및 산출절차 등 : 운영회사의 자율성 보장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심사기준 중 요율산출방법 및 요율구조 관련 요율 및 상품 부분 개선(안)

현행	개정
현행은 전통적 요율산출 과정이 세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① 요율산출 기간 등 일부 항목만 존속 ② 요율산출절차 및 요율구조는 회사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 도입필요

4. 자율담보 개선방안 : 운영모형

❖ 자율담보 운영구조 모형



5. 자동차보험의 현재, 합의, 개선 모형 비교

❖ 요율수준 결정(요율조정)에 이익(손실)원칙 적용

1. 합의 모형 : 규제 담보는 No Loss, No Profit으로 요율수준은 운영주체별로 차등허용
2. 과도기 모형 : 규제 담보는 심의회를 운영하여 여론을 반영하므로 요율수준 및 조정이 제한적/자율 담보는 심사기준을 자율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현재모형			합의모형			개선모형		
담보	이익(손실)	요율수준 및 조정	담보	이익(손실)	요율수준 및 조정	담보	이익(손실)	요율수준 및 조정
의무	회사 자율	회사자율 (여론 등 제약존재)	규제	No Loss, No Profit (정부보장 사업포함)	운영 주체별 보험료 차등	규제	No Loss, No Profit	회사자율 그러나 제한(여론통제)* -심의회운영
임의	회사 자율	회사자율 (여론 등 제약존재)	자율	회사자율	회사자율	자율	회사자율	회사자율

5. 자동차보험의 현재, 합의, 개선 모형 비교

❖ 담보유형에 따른 상품(약관)내용 및 요율 요소/구조

- 현재 모형 : 의무 및 임의 모두 모든 회사 동일
- 합의 모형 : 규제 담보는 표준화/ 단순화, 자율담보는 회사 자율
- 과도기 모형 : 규제담보는 표준화/ 현행 유지하되 단순화 지향, 자율담보는 회사 자율

현재모형				합의모형				개선모형			
담보	상품(약관) 내용	요율		담보	상품(약관) 내용	요율		담보	상품(약관) 내용	요율	
		요소	구조			요소	구조			요소	구조
규제	모두 동일		모두 동일	규제	모두 동일 (표준화)	제한 (단순화)	제한 (단순화)	규제	모든 사고 보 장/고의제외 (표준화)	제한 (현행 유지 하되 단순 화 지향)	모두 동일
자율	모두 동일		모두 동일	자율	회사자율	회사자율	회사자율	자율	회사자율	회사 자율	회사 자율

[해외사례]

일본

캐나다: 퀘벡

캐나다: 매니토바

- ❖ 브리티시 컬롬비아,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퀘벡 州에서 자동차 공영보험을 실시(이중 본 연구에서는 매니토바와 퀘벡 주를 예시함)
- ❖ 매니토바 州
 - 자동차 공영보험기관 Manitoba Public Insurance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대상담보 : 의무보험은 모든 충돌 위험, 제3자 배상,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 제공
임의보험은 의무보험의 보험금 증액 및 의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추가 보상함.
 - 요율 : 모든 면허증에 의무보험료를 부과하여 운전자 사고 위험 공유
 - 요율요소 : 거주 지역, 자동차 사용용도, 자동차의 종류 및 특성, 운전자 안전평가 척도
 - 요율변경 : Manitoba Public Insurance는 공정한 요율결정을 위해 요율 변경시 Public Utilities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퀘벡 州
 - 자동차 공영보험기관인 SAAQ(Societe de l'assurance automobile du Quebec)에서는 자기신체사고 및 대인배상을 담보하며, 자기차량파손 및 대물 손해는 민간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가입
 - SAAQ는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용 및 소득상실을 포함한 경제적 보상
 - 민간보험회사에 의무가입해야하는 대물배상 최소가입한도는 5만 달러
 - 운영주체 : 신체상해는 SAAQ, 재물손해는 민영보험회사에서 운영
 - 이익(손실) 원칙 : SAAQ는 3년마다 자동차 보험기금 재정상태를 검토하여 보험료 조정
 - 요율 : 운전면허소지자 및 자동차 소유자는 운전행태 및 자동차 유형에 따른 위험에 기초하여 운전면허증 발급 및 자동차 등록시에 보험료 납부

❖ 일본은 자동차보험을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자동차의무보험

- 담보범위 : 신체상해배상책임으로 신체상해 및 영구장애 그리고 사망을 포함
- 운영주체 : 손해보험회사 및 농업협동/소비자/공용시설 조합 및 조합연맹
 - 상호조합을 운영하여 위험 분산
- 이익(손실) 원칙 : No Loss - No Profit. 언더라이팅 결과를 매년 반영
- 요율 : 손해보험요율산출단체의 기준요율을 획일적으로 사용
 - 기준요율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요율 타당성 검증하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심의회(금융청 내에 설치)의 판단에 따름.
 - 심의회는 보험료율 뿐 아니라 면허증 발급, 약관 승인, 보험료 검사 및 개정 등의 업무
 - 심의회는 교수 및 학자 7명, 도로 및 교통사고분야 전문인 7명, 보험사업 전문지식인 3명, 총 13명
- 요율요소 : 지역, 차종, 보험기간

❖ 자동차임의보험

- 담보범위 : 초과 신체배상책임, 재물손해배상책임, 자기신체상해, 무보험차량사고, 신체승객상해, 신체상해보상, 자기차량손해
- 운영주체 : 손해보험회사
- 이익(손실) 원칙 : 보험회사 자율
- 요율 : 나이, 성, 운전경력, 운전목적, 연비, 지역, 차량타입, 다량 차량보유권, 차량 안전 상태 등 9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차등화된 요율의 범위 제한을 의무화

THANK YOU

kiri

